

의안 번호	2089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	------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4.(목)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3. 5. 4.(목)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3. 5. 19.(금)

2.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 중구축구장 조성 변경, 다운동 도시재생 관광문화 거점시설 조성, 다운동 도시재생 정원 커뮤니티 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중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 2023. 4. 13.
- 나. 계획의 총괄
 - 1) 취득대상 재산
 - 가) 토 지
 - (1) 수 량: 48필지
 - (2) 면 적: 37,242.9㎡
 - (3) 기준가격: 10,332백만원

나) 건 물

- (1) 수 량: 4동(매입 1, 신축 3)
- (2) 연 면 적: 4,408.12㎡
- (3) 기준가격: 14,817백만원

다) 그 외 자산

- (1) 수 량: 1건
- (2) 기준가격: 7,468백만원

다. 사업별 계획

1) 반구1동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의 건

가) 사업목적 및 용도

- 다양한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복합화 건립 필요성 증대
- 반구1동행정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최적 건립 위치 및 사업 규모 변경 추진
- ※ 국공립어린이집 부지내 별도 건립(시설 이용 및 관리 편의성 제고)

나) 취득대상 재산변동 현황

- 토지 및 건물(변동)

사업의 위치		연면적(㎡)		추정가액(천원)		취득사유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울산중구 반구동 582-6외 1필지	울산중구 반구동 452-1	1,680	3,150	6,663,000	8,528,386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

※ 위치 변동 토지 현황 (기 취득재산)

재 산 의 표 시				매입단가 (원/㎡)	매입가액 (천원)	소유자	취득사유
소재지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1,985.6	1,985.6		2,615,035		
울산 중구 반구동 452-1	대	1,985.6	1,985.6	1,317,000	2,615,035	울산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소유

다)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라) 소요예산

- 총사업비: 8,528백만원 ※토지 제외(기 취득재산)
- 연도별 재원 및 사업비 내역

(단위: 천원)

연도 재원	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사업비 내역
계	8,528,386	251,916	4,138,235	4,138,2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복지센터(주차장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7,590,354 - 설계감리 251,916 - 시설부대비 13,046 - 부대시설 673,070
국 비	0	0	0	0	
시 비	0	0	0	0	
구 비	8,528,386	251,916	4,138,235	4,138,235	

마) 사업규모

- 위 치: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452-1
- 부지면적: 1,985.6㎡

【건물개요】

-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
- 연 면 적 : 3,150㎡(지하주차장 1,350㎡. 지상4층 1,800㎡)
- 주요시설 : 지하주차장, 민원실, 업무공간, 복합문화공간, 도서관, 예비군동대 등

바) 추정가액 명세

- 토 지: 2,615,035천원(개별공시지가 기준) ※기 취득재산
- 건축비: 8,528,386천원

사) 계약방법

- 일반 입찰에 의한 의한 건물 신축

바) 사업규모

- 위 치 : 울산 중구 약사동 91번지 일원
- 부지면적 : 36,840m²
- 시설내용 : 축구장(3면), 주차장, 샤워실, 화장실 등

사) 기준가격 명세

- 취 득
 - 토지매입비 : 8,032백만원
 - 공 사 비 : 7,044백만원
 - 용역비(설계비 등) : 424백만원

아) 계약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의한 토지매입

3) 다운동 도시재생 관광문화 거점시설 조성건

가) 사업목적 및 용도

- 태화강국가정원을 연계한 관광·문화거점 조성을 통한 먹거리단지 상권 활성화와 도시브랜드화

나) 사업기간 : 2024년 ~ 2027년

다) 사업내용 : 지역특화 도시재생 관광문화 거점시설 조성

라) 소요예산

- 총사업비 : 4,410백만원(국 2,205, 시 1,102.5 구 1,102.5)
- 연도별 재원 및 사업비 내역

(단위: 천원)

연도 재원	계	2023년도	2024년도 이후	사업비 내역
계	4,410,000	1,000,000	3,410,000	
국비	2,205,000		2,205,000	• 부지매입비 1,000,000 • 공 사 비 3,410,000
시비	1,102,500		1,102,500	
구비	1,102,500	1,000,000	102,500	

마) 사업규모

-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태화동 727-18, 727-19
- 부지면적 : 352.6㎡
- 주요시설 : 여행안내소, 게스트하우스, 옥상정원 등 관광거점시설
- 건축규모 : 건축면적 160㎡, 연면적 565㎡ 4층

바) 기준가격 명세

- 취득
 - 토 지 : 1,000,000천원(태화동 727-18번지, 가감정 기준)

사) 계약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의한 토지매입

4) 다운동 도시재생 정원 커뮤니티시설 조성건

가) 사업목적 및 용도

- 태화강국가정원을 연계한 커뮤니티 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먹거리단지 상권 활성화

나) 사업기간 : 2024년 ~ 2027년

다) 사업내용 : 지역특화 도시재생 정원 커뮤니티 시설 조성

라) 소요예산

- 총사업비 : 3,928백만원(국 1,964, 시 982, 구 982)
- 연도별 재원 및 사업비 내역

(단위: 천원)

연도 재원	계	2023년도	2024년도 이후	사업비 내역
계	3,928,000	1,300,000	2,628,000	
국비	1,964,000		1,964,000	· 보 상 비 1,300,000 · 공 사 비 2,628,000 (설계 102,000 기타 390,000 포함)
시비	982,000		982,000	
구비	982,000	1,300,000	△318,000	

마) 사업규모

-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911-16
- 부지면적 : 225.3m²
- 주요시설 : 반려식물 치료·관리 실습 및 식물 테라피 공간조성
- 건축규모 : 연면적 346.56m² 지상3층(기존건물 철거 후 신축)

바) 기준가격 명세

- 취 득
 - 토 지 : 1,049,000천원(부동산 실거래가 기준)
 - 건 물 : 251,000천원(개별주택가격 기준)

사) 계약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의한 토지매입

4.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5.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 중구축구장 조성 변경, 다운동 도시재생 관광문화 거점시설 조성, 다운동 도시재생 정원 커뮤니티 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1. 20., 2021. 4. 20.>

- 1.제10조및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2.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 3.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 5.제24조또는제34조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5. 1. 20., 2021. 4. 20.>

-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 3.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법 제10조의2 제1항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2. 9., 2022. 4. 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 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2. 4. 20.>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4. 20.>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개정 2016. 8. 31., 2022. 4. 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

조 제1항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삭제<2022. 4. 2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 7. 7.]

[제목개정 2022. 4. 20.]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1. 20., 2021. 4. 20.>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5. 1. 20., 2021. 4. 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①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1.5.><개정 2022.10.4.>

- 1.<개정 2015.10.28>삭제<2018.11.5.>
- 2.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삭제<2009.3.30><개정 2015.10.28>
- 3.<개정 2022.10.4.>삭제<2022.10.4.>
- 4.<신설 2014.6.30><개정 2022.10.4.>삭제<2022.10.4.>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6.30>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 및 처분에 따른 용도폐지<개정 2009.3.30><개정 2014.6.30><개정 2014.12.22><개정 2015.10.28><개정 2018.11.5.>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의 취득·처분<개정 2014.6.30><개정 2018.11.5.>
- 3.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개정 2014.6.30><개정 2018.11.5.>
- 4.<개정 2014.6.30><개정 2018.11.5.>삭제<2019.6.3.>
- 가.<개정 2014.12.22><개정 2018.11.5.>삭제<2019.6.3.>
- 나.삭제 <2014.6.30>
- 다.<개정 2014.6.30.><개정 2018.11.5.>삭제<2019.6.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반구1동행정복지센터 건립변경

○ 위치도



○ 현장사진



2 중구축구장 조성 변경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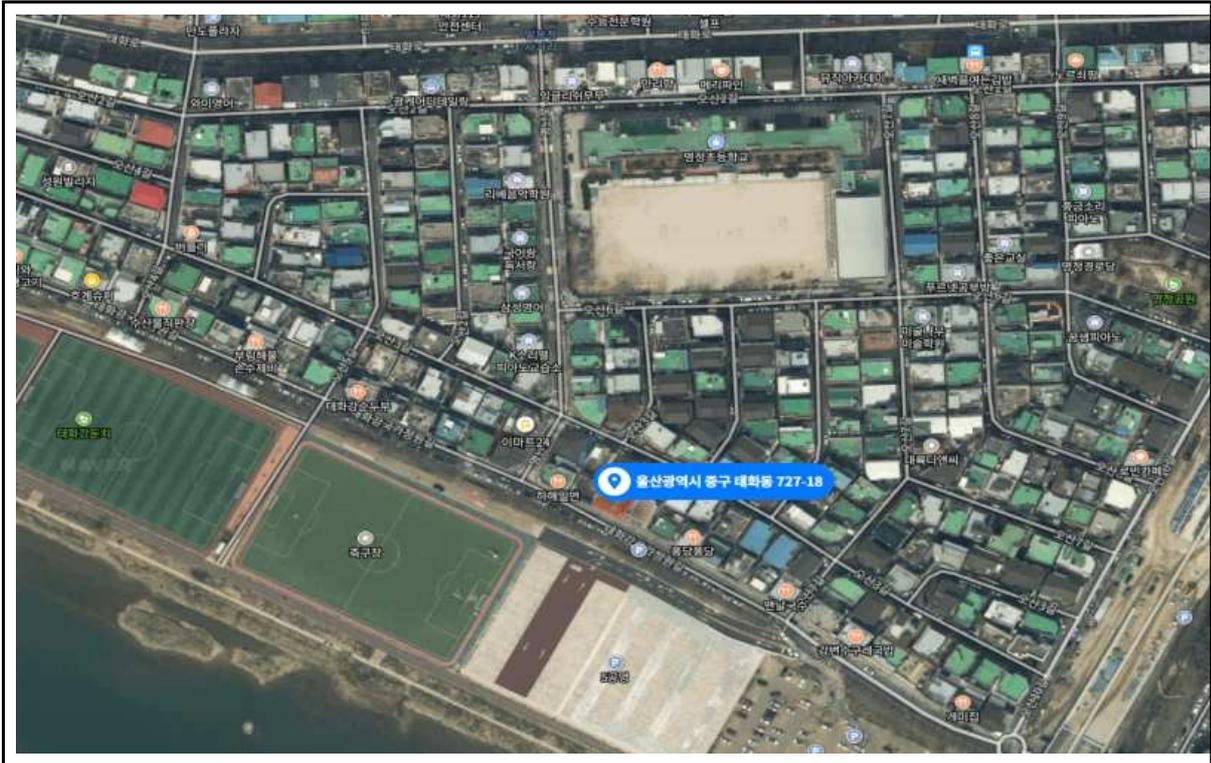


○ 현장사진



③ 다운동 도시재생 관광문화 거점시설 조성

○ 위치도



○ 현장사진



4] 다운동 도시재생 정원 커뮤니티 시설조성

○ 위치도



○ 현장사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 토지

(단위: m²,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예상) 시 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면적				
1	매입	약사동 76	답	4,311	2,076	467,100	2023.5~12.	축구장 조성	
2	매입	약사동 78	답	1,841	433	97,425	2023.5~12.	축구장 조성	
3	매입	약사동 79	답	2,370	2,341	468,200	2023.5~12	축구장 조성	
4	매입	약사동 80	대	374	374	392,700	2023.5~12	축구장 조성	
5	매입	약사동 81	대	608	608	638,400	2023.5~12	축구장 조성	
6	매입	약사동 81-1	과	3,662	2,241	504,225	2023.5~12	축구장 조성	
7	매입	약사동 82	답	456	456	91,200	2023.5~12	축구장 조성	
8	매입	약사동83	답	2,393	2,393	478,600	2023.5~12	축구장 조성	
9	매입	약사동 84-1	답	2,251	2,251	506,475	2023.5~12	축구장 조성	
10	매입	약사동 84-2	답	2,699	1,464	329,400	2023.5~12	축구장 조성	
11	매입	약사동 84-3	도	99	66	4,950	2023.5~12	축구장 조성	
12	매입	약사동 84-4	도	3	2	150	2023.5~12	축구장 조성	
13	매입	약사동 86	전	397	7	1,400	2023.5~12	축구장 조성	추가
14	매입	약사동 87-1	과	1,695	1,695	381,375	2023.5~12	축구장 조성	
15	매입	약사동 87-2	과	3,552	1,855	417,375	2023.5~12	축구장 조성	
16	매입	약사동 87-3	도	4	4	300	2023.5~12	축구장 조성	
17	매입	약사동 87-4	도	30	30	2,250	2023.5~12	축구장 조성	
18	매입	약사동 87-5	도	121	121	9,075	2023.5~12	축구장 조성	
19	매입	약사동 88	답	1,000	1,000	225,000	2023.5~12	축구장 조성	
20	매입	약사동 88-1	답	991	991	222,975	2023.5~12	축구장 조성	
21	매입	약사동 88-2	답	890	890	200,250	2023.5~12	축구장 조성	
22	매입	약사동 88-3	도	10	10	750	2023.5~12	축구장 조성	추가
23	매입	약사동 88-4	도	19	19	1,425	2023.5~12	축구장 조성	추가
24	매입	약사동 88-5	도	152	53	3,975	2023.5~12	축구장 조성	추가
25	매입	약사동 89	전	1,035	1,035	207,000	2023.5~12	축구장 조성	
26	매입	약사동 90	전	119	119	22,610	2023.5~12	축구장 조성	
27	매입	약사동 91	답	8,038	7,307	1,680,610	2023.5~12	축구장 조성	
28	매입	약사동 91-2	도	179	179	13,425	2023.5~12	축구장 조성	
29	매입	약사동 91-3	도	41	41	3,075	2023.5~12	축구장 조성	
30	매입	약사동 94	전	485	485	109,125	2023.5~12	축구장 조성	
31	매입	약사동 94-1	도	90	90	16,200	2023.5~12	축구장 조성	추가
32	매입	약사동 124	전	192	192	38,400	2023.5~12	축구장 조성	
33	매입	약사동 1079	구거	5,164	2,140	160,500	2023.5~12	축구장 조성	
34	매입	약사동 산7-2	임	19,339	1,637	139,145	2023.5~12	축구장 조성	
35	매입	약사동 산8	임	17,851	15	1,275	2023.5~12	축구장 조성	추가

36	매입	약사동 산7-2	임	3,372	112	9,520	2023.5~12	축구장 조성	추가
37	매입	약사동 산7-3	임	2,678	990	84,150	2023.5~12	축구장 조성	
38	매입	약사동 산7-4	임	2,777	262	22,270	2023.5~12	축구장 조성	추가
39	매입	약사동 산18	임	11,253	29	2,465	2023.5~12	축구장 조성	
40	매입	약사동 산8-2	도	650	226	6,780	2023.5~12	축구장 조성	
41	매입	약사동 산20-3	임	7,882	284	34,080	2023.5~12	축구장 조성	추가
42	매입	약사동 산20-4	임	662	63	8,820	2023.5~12	축구장 조성	추가
43	매입	장현동 580	도	1,015	126	20,160	2023.5~12	축구장 조성	추가
44	매입	장현동 581	구거	337	28	2,100	2023.5~12	축구장 조성	추가
45	매입	장현동 산48-9	도	4,802	29	1,595	2023.5~12	축구장 조성	추가
46	매입	장현동 50-1	도	2,704	71	3,905	2023.5~12	축구장 조성	추가
47	매입	태화동 727-18	대	177.6	177.6	1,000,000	2023.5~12	도시재생 거점시설	
48	매입	태화동 911-16	대	225.3	225.3	1,000,000	2023.5~12	도시재생 커뮤니티	

◎ 건물

(단위: m²,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연면적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계			3243.72	14,817,000			
1	매입	태화동 911-16	346.56	251,000	2023년	거점시설 조성	철거후 신축
2	신축	반구동 452-1	1,985.6	8,528,000	2026년	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건립	
3	신축	태화동 727-18	565	3,410,000	2027년	도시재생 관광문화 거점시설 조성	
4	신축	태화동 911-16	346.56	2,628,000	2027년	도시재생 정원 커뮤니티 시설조성	

◎ 기타

(단위: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시설내용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1	시설 설치	약사동 91번지 일원	축구장, 벤치, 안전휀스 등	7,468,000	2024년	축구장 조성	